

의 안 번 호	제529호
의 결 연 월 일	. . . (제 회)

충청북도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이양섭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4년 3월 5일

충청북도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양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29
----------	-----

발의연월일 : 2024년 3월 5일

발 의 자 : 이양섭, 박경숙, 김꽃임, 김국기,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1. 제안이유

- 충청북도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안 제4조)
-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육성 사업 등(안 제5조)
- 수행기관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안 제6조 및 안 제7조)
- 충청북도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협의회 설치·구성·운영 등(안 제8조 ~ 안 제10조)
- 산·학·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포상(안 제11조 및 안 제12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붙임
- 조례안예고 : 2024. 3.
- 협의 : 충청북도 과학인재국 산업육성과
- 비용추계 : 붙임

충청북도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탄소중립을 말한다.
2. “시험인증산업”이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적합성평가로 제품, 서비스, 공정 등이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교정, 인증, 시험, 검사 등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3. “진천·음성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이하 “탄소중립 시험인증특구”라 한다)란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의 거점기반 마련과 전략적 육성으로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탄소중립 시험인증특구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탄소중립 시험인증특구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육성 종합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100

제5조(탄소중립 시험인증특구 육성 및 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탄소중립 시험인증특구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탄소중립 시험인증특구 경쟁력 강화
 2.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 관련 신기술·핵심기술·부품 개발 등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3.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 관련 국내외 시장 진출 지원
 4. 산·학·연·관 협력 및 지원
 5. 그 밖에 탄소중립 시험인증특구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수행기관등에 대한 지원)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행기관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 또는 충청북도가 출자·출연한 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6. 그 밖에 도지사가 탄소중립 시험인증특구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② 도지사는 수행기관등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수행기관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 지도·감독 및 평가하고,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탄소중립 시험인증특구 협의회 설치 등) 도지사는 탄소중립 시험인증특구의 육성·지원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사업의 협력적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2. 탄소중립 시험인증특구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육성
3. 탄소중립 시험인증특구 육성 사업의 위탁 및 지원
4. 탄소중립 시험인증 클러스터 조성
5. 그 밖에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육성·지원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과학인재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기업인, 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기업지원기관의 임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탄소중립 시험인증특구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협의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탄소중립 시험인증특구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산·학·연·관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탄소중립 시험인증특구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2. 신지식 및 기술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3. 관련 기업 등으로 기술이전 및 기업 기술지원과 자문
4. 그 밖에 도지사가 탄소중립 시험인증특구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포상) 도지사는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단체에게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조례의 제정)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다.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제정·개정·폐지하는 조례는 이 법의 목적과 내용 및 제14조에 따라 승인된 특화특구계획과 부합하여야 한다.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적합성평가”란 제품등이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교정, 인증, 시험, 검사 등을 말한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충청북도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의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 경쟁력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2. 비용발생 요인

-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육성 및 지원

3. 관련조문

- 조례안 제5조(탄소중립 시험인증특구 육성 및 지원사업 등)
- 조례안 제6조(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원)

4.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재정수반요인 : 탄소중립 시험인증특구 육성·지원에 대한 소요예산
- 추 계 기 간 :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나. 추계결과

- 추 계 결 과 : 5억원
 - 시험인증 인력양성 지원 : 50,000천원
 - 시험인증 경쟁력 강화 기획사업 : 150,000천원
 - 시험인증 페스티벌 개최 : 50,000천원
 - 시험인증 산업관광 : 50,000천원
 - 특구 특화사업 추진협의회 운영지원 : 200,000천원
- 재원조달방안 : 도비

5. 연도별 비용추계표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합 계
세 출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시험인증 인력양성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경쟁력 강화 기획사업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시험인증 페스티벌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시험인증 산업관광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특구 특화사업 추진 협의회 운영지원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재원조달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자체 수입	소계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세외수입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